

# 탈세와 징세비 간의 상관분석을 통한 최적 징세비 모형 도출에 관한 연구

## -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적출소득을 중심으로 -

정창륜\* · 박주문\*\*

A Study on the Derivation of the Optimum Taxation Cost Model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ax Evasion and Taxation Cost  
- Case of high-income individual business' tax evasion -

Jeong, Chang-Yoon\* · Park, Ju-Moon\*\*

**Abstract:** Tax evasion is increasing, but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is evaluated as improving. This is because the taxation cost, which is a measure to judge the efficiency of the tax administration, does not consider the tax evasion effect at all. This method of estimating the cost of taxation is a dispute that neglects the role of taxation authorities in tax evasion. The existing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 tax evasion model focused on maximizing the utility through the tax evasion of the taxpayer as the tax evasion approaches the individual's deviant problem. However, this has the aspect of making the role of the tax authorities in tax evasion negative.

This study empirically derived the optimal size of tax administration in Korea by using tax collection cost and tax cooperation cost. Also, it is meaningful to consider the role of the taxation authorities in tax evasion and to derive the optimal taxation cost model by estimating the decrease in tax evasion due to the taxation expenditure of the tax authorities. In order to derive the optimal size of tax administration in Korea, taxation cost and tax cooperation cost are derived by classifying tax officials. The optimal taxation cost model was derived by estimating the taxation expenditure related to tax eva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to make it possible to emphasize the role of tax authorities in studying future tax evasion by studying the effect of taxation expenditure on tax evasion.

**키 워 드 :** 탈세, 세무행정, 적정 세무행정규모, 최적 징세비 모형

**Key Words :** Tax evasion, Tax administration, Optimal size of tax administration, Optimal taxation cost model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는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세목으로 도입되고 1994년 12월 22일 소득세가 보통징수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세법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매출액에서 현금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현금거래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소득의 포착이 쉽지 않다. 실제로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주로 현금을 받는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세무조사 결과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48%로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의하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

문직과 소비성서비스업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2010년 탈루소득은 4018억 원에서 2014년 1조 5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정세액 역시 2010년 2030억 원에서 2014년 541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징세의 효율성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징세비용(세수 100원당 징세비 비율)은 2013년 0.72원으로 2004년 0.86원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2011년 기준 미국의 징세비용 0.62원을 제외하고 0.76원으로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탈세에 관한 과세당국의 방지대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화,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제출 의무 등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세무조사 같은 사후적인 대책만 존재할 뿐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세무회계학과 4학년

\*\*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행정학과 교수, 도시과학연구원, 교신저자(jumoonpark@inu.ac.kr)

이다. 징세비용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역시 탈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 하에서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의 적정 세무행정 규모를 산정해 보고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탈루소득과 과세당국의 징세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적 징세비 모형을 도출함에 그 목적이 있다.

## 1.2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탈세에 관한 연구는 Allingham & Sandmo(1972)에 의해 처음 이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후 초기에는 주로 직접세의 탈세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탈세라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인 요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탈세와 세수변화, 세율, 벌금률 및 적발확률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Allingham & Sandmo의 모형이 적발확률, 벌금률 그리고 세율이 주어졌을 때 개인의 탈세행위가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했고, Kolm(1973)은 기존의 연구에 처음으로 공공재를 추가하여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 하는 경우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간접세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Marrelli(1984), Virmani(1989) 등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며, 기존의 직접세 연구와는 달리 탈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대상의 가격 및 생산량에 간접세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또한, 간접세의 특징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세금 전가와 탈세의 관계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Virmani(1989)의 연구에서 간접세의 탈세가 완전 경쟁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특정한 가정 하에서 탈세가 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탈세에 관한 이론은 위 같이 개인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되어 왔으나 이를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한계를 지니왔다. 때문에 Alm, McClelland & Schultz(1992)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대효용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0년대 이후 Alm, Bordingnon(1993) 등이 사회적 규범, 동태효과, 공공재 공급에 대한 인식 등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기대효용이론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더 작은 규모의 탈세가 발생하는 데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탈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탈세를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납세자 개인의 일탈행위로 접근하고 있다. 더욱이 세율, 벌금률 및 세무조

사확률 등과 같은 과세당국 차원의 변수들이 제한적인 상황들로 주어져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론상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탈세에 있어서 과세당국의 역할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현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현금영수증, 탈세신고포상금 및 세무조사 등이 있으며, 세무조사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상 처벌 같은 과세당국의 사후적인 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납세자들 간의 견제를 통한 사전 방지에 집중되어 있다.

## 1.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징세비용의 감소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탈세액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세무행정 규모를 산출해보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과 징세비의 변화추이를 상관분석해서 우리나라의 적정한 탈세관련 징세비 지출규모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적정 징세비 지출규모와 우리나라의 적정 세무행정 규모를 비교분석하여 탈세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기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 한다.

첫째,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세무행정 규모를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국내 세무행정규모의 실증적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과세당국이 지출한 징세비처럼 매년도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일일이 추적하여 집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납세협력비용은 현재 국세청이 측정한 2007년과 2011년 두 개 연도의 자료만 존재할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납세협력비용 자료와 2015년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여 국내 세무행정규모를 도출하였다. 사용된 2015년 납세협력비용은 기존의 국세청 세수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선형함수로 추정하였다.

둘째, 탈루소득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 인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징세비와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탈루소득을 특정 연도의 조사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한 실질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조사대상 인원의 변동효과가 탈루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을 2005년 조사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탈루소득을 산출하고, 실질 탈루소득 및 명목 탈루소득 각각 징세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징세비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공무원 규모, 적출소득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인원에 해당하는 국세청 세출예산 항목을 연도별로 분석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세출예산에서의 평균적인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탈세를 고려한 징세비를 추정하였다. 징세비 지출에 따른 탈루소득 감소분을 추정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탈세를 고려한 징세비와 징세비 지출에 따른 탈루소득 감소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최적 징세비 모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적정 세무행정 규모하의 징세비 지출 규모와 최적 징세비 모형 하의 추정 징세비 지출 규모를 비교분석하여 탈세방지를 위한 지출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 2. 본론

### 2.1 징세비용 현황과 적정 세무행정 규모

#### 2.1.1 징세비용 현황 분석

징세비용이란 세수 100원당 과세당국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징세비용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징세비용은 과세당국의 징세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징세비용은 2005년 81원에서 2015년 71원으로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의 효율성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

Table 1. 국세 징세비 현황

연도	국세청 세수 (억원)	징세비 (백만원)	징원 (명)	1인당 세수 (백만원)	1인당 징세비 (백만원)	세수 100원당 징세비 (원)
2005	1,204,237	976,479	15,619	7,710	63	0.81
2006	1,302,609	1,023,822	16,390	7,948	62	0.79
2007	1,530,628	1,081,983	18,362	8,336	59	0.71
2008	1,575,286	1,239,631	18,341	8,589	68	0.79
2009	1,543,305	1,300,741	18,341	8,415	71	0.84
2010	1,660,149	1,341,752	18,546	8,952	72	0.81
2011	1,801,532	1,364,417	18,765	9,600	73	0.76
2012	1,920,926	1,339,749	18,797	10,219	71	0.70
2013	1,902,353	1,365,710	18,815	10,111	73	0.72
2014	1,957,271	1,462,947	18,917	10,347	77	0.75
2015	2,081,615	1,480,552	18,951	10,984	78	0.71

자료 : 2016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 2.1.2 우리나라 적정 세무행정 규모

적정 세무행정의 규모는 세계운용에 따른 총

비용인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합이 최소화 되는 세무행정의 규모를 의미한다. 납세협력비용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외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징세비용은 조세체계가 복잡할수록 세무행정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며, 납세협력비용은 조세체계가 복잡할수록 증가하고 세무행정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수를 세무행정규모의 척도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과 2011년 총 2회 측정되었으며 Table 2와 같다.

Table 2. 국내 납세협력비용

단위 : 조 원

구분	최초측정 (2007년 기준)	2차측정 (2011년 기준)	증감
합계	7.63	9.89	2.26
법인사업자	3.96	5.04	1.09
개인사업자	3.07	4.12	1.05
비사업자	0.61*	0.73	0.12

\* 2007년 기준 비사업자 납세협력비용은 측정되지 않아, 2011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자연증가율을 역산하여 추정 자료 : 2014.11.19.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적정 세무행정 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Table 3의 2015년 납세협력비용 추정치는 기존의 국세청 세수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선형함수를 활용하였다.

Table 3. 2015년 국내 납세협력비용 추정치

구분	국세청 세수 (조원)	납세협력비용 (조원)	세수 100원당 납세협력비용(원)
2007년	153.0628	7.63	4.98
2011년	180.1532	9.89	5.50
2015년	208.1615	12.22*	5.87

\* 2007년과 2011년 국세청 세수와 납세협력비용의 상관관계로 도출한 선형함수( $y = 0.0834x - 5.1392$ )로 추정된 2015년 납세협력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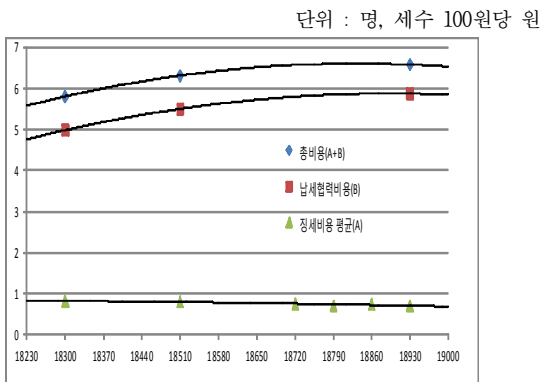
적정 세무행정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세무행정 규모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세무행정 규모는 세무공무원 규모로 하였다. 징세비용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치를 세무공무원 규모 급간별로 평균하였다. 세무공무원 규모는 18,300명부터 70명 단위로 총 10개의 급간으로 구분하였으며 18,300명 이상 18,370명 미만 급간의 징세비용의 경우 2008년(0.79)과 2009년(0.84)의 평균치이고, 18,790명 이상 18,860명 미만 급간의 징세비용의 경우 2012년(0.7)과 2013년(0.72)의 평균치이다. 이 외

의 나머지 급간의 경우 단일연도의 징세비용이다.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세수 1,000원 당 납세자의 납세관련 지출비용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징세비용과의 단위조정을 위해 세수 100원 당 납세자의 납세관련 지출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세무공무원 규모별 징세비용 평균과 납세협력비용을 합한 총비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으며 Table 4의 납세협력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급간의 경우 총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총비용 추세선으로 대체하였다. Table 4의 총 급간 중 세무공무원 규모가 작을수록 세수 100원당 총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Table 4. 세무공무원 규모별 총비용**  
단위 : 명, 세수 100원당 원

세무공무원*1	징세비용 평균 (A)	납세협력비용 (B)*2	총비용 (A+B)	$\frac{B}{A+B}$
18,300~18,369	0.82	4.98	5.80	85.86%
18,370~18,439	-	-	-	-
18,440~18,509	-	-	-	-
18,510~18,579	0.81	5.50	6.31	87.16%
18,580~18,649	-	-	-	-
18,650~18,719	-	-	-	-
18,720~18,789	0.76	-	-	-
18,790~18,859	0.71	-	-	-
18,860~18,929	0.75	-	-	-
18,930~19,000	0.71	5.87*3	6.58	89.21%
표준편차	0.0432	0.3650	0.3234	-
R <sup>2</sup>	0.8275	0.9198	1	-

\*1 정무별정, 직제개정 전 기능직 해당 직렬 제외인 인원수  
\*2 세수 100원 당 납세협력비용 : (Table 3의 납세협력비용 / Table 1의 국세청 세수) × 100  
\*3 Table 3에서 선형분석한 예측치에 따른 세수 100원 당 납세협력비용



**Figure 1. 우리나라 적정 세무행정 규모**

세무공무원 규모와 세수 100원 당 총비용이 비례하는 것은 평균 징세비용보다는 납세협력비용의 영향이 크다. 납세협력비용 자체가 평균 징세비용보다 약 7.07배<sup>1)</sup> 크고 표준편차 역시 징세비용보다 약 8.45배 크기 때문에 총비용 추세선이 납세협력비용 추세선에 의존한다. Figure 1에서도 납세협력비용의 추세선과 총비용의 추세선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세무행정 규모는 세무공무원 규모에 따른 징세비용 평균과 납세협력비용의 R<sup>2</sup>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납세협력비용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향후 세무행정 규모의 최적화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협력비용의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규모가 증가하는데 반해 징세비용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과세당국의 징세 효율성의 증가를 나타내 고무적이다.

## 2.2 탈루소득과 징세비 간의 상관분석

### 2.2.1 고소득 개인사업자 탈루소득 현황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의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 현황은 Table 5과 같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의 합계인 총소득 중 적출소득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조사대상 납세자의 수입금액 중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소득으로서 세무조사로 인해 밝혀진 소득을 의미한다.

**Table 5.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 현황 및 소득적출률**

연도	인원	총소득	신고소득	적출소득	부과세액	소득적출률
2005	422	5,302	2,286	3,016	1,094	56.9%
2006	993	31,886	16,040	15,846	5,615	49.7%
2007	315	11,048	5,795	5,253	2,147	47.5%
2008	482	13,637	7,558	6,079	3,019	44.6%
2009	280	7,911	4,942	2,969	1,261	37.5%
2010	451	10,285	6,267	4,018	2,030	39.1%
2011	596	20,431	12,764	7,667	3,632	37.5%
2012	598	17,967	10,889	7,078	3,709	39.4%
2013	721	20,833	11,047	9,786	5,071	47.0%
2014	870	23,347	13,296	10,051	5,413	43.1%
2015	960	27,326	15,585	11,741	6,059	43.0%

자료 : 국세청

소득적출률은 2005년 56.9%에서 2009년 37.5%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5년 43.0%를 기록했다. 적출소득 또한 2005년 2,016억 원에서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1) Table 4의 세무공무원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을 징세비용으로 나눈 값의 평균치이다.

2014년에는 10,051억 원으로 소득탈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탈루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 가산세를 고려한 세율  
 = ① + ② + ③ =  $I^* \times 57.361\%$   
 ① 부정과소신고세액 =  $I^* \times 38\%$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I^* \times 38\%) \times 40\%$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I^* \times 38\%) \times 365\text{일(미납기간 1년 가정)} \times 3/10,000$   
 \* I : 탈루소득

소득탈루액에 대한 부과세액 역시 소득탈루액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5%,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8%였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 가산세율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부정과소신고세액의 40%,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0을 곱하게 된다. 즉, 3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에 대하여 미납기간을 1년으로 가정한 신고·납부 가산세를 고려하여 적용받게 될 세율은 다음과 같다.

2.2.2 실질 적출소득 분석

1) 실질 적출소득

적출소득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인원에 따라 증가하는데 반해 징세비의 경우 세무행정 규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탈루소득과 징세비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인원에 따른 적출소득의 규모를 실질적인 규모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질 적출소득 산정은 세무조사 대상 인원의 영향을 배제하여 기준연도에서 1인당 실질적인 적출소득 변화추이 분석을 가능토록 한다. 2005년 세무조사 대상 고소득 개인사업자 인원을 기준으로 한 적출소득 현황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2005년 기준 실질 적출소득

단위 : 명, 억 원

연도	인원	명목 적출소득	실질 적출소득*1
2005	422	3,016	3,016
2006	993	15,846	7,053
2007	315	5,253	7,037
2008	482	6,079	5,322
2009	280	2,969	4,475
2010	451	4,018	3,760
2011	596	7,667	5,429
2012	598	7,078	4,995
2013	721	9,786	5,728
2014	870	10,051	4,875
2015	960	11,741	5,161

\*1 2005년 세무조사 대상 422명 기준 실질 적출소득

2) 실질 적출소득과 명목 적출소득의 연도별 변화추이

Table 6을 그래프로 보면 Figure 2와 같다. Figure 2에서 2006년,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 명목 적출소득이 실질 적출소득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적출소득 자체가 세무조사 대상 인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sup>2)</sup>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조사 대상인원 평균은 608명인데 반해 2006년,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의 평균 세무조사 대상인원은 886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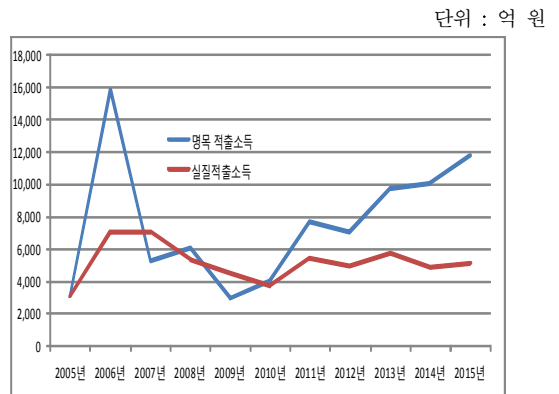


Figure 2. 연도별 명목 적출소득과 실질 적출소득 변화추이

2.2.3 징세비와 적출소득 간 상관분석

1) 징세비와 실질 적출소득 간 상관분석

과세당국의 징세비 지출은 세무행정 규모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이며<sup>3)</sup> 적출소득은 세무조사 대상 인원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이다. 이 두 종속변수를 하나의 독립변수에 따른 상관분석을 하기 위해서 적출소득을 실질 적출소득으로 전환하여 적출소득으로 하여금 세무조사 대상 인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하였다. 실질 적출소득은 세무조사 대상 인원에 무관하게 연도별로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연도별 징세비 지출과 상관분석 한 후 이를 세무공무원 규모와 비교분석 하였다. 연도별 실질 적출소득 및 징세비 현황은 Table 7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다.

2) 세무조사 대상 인원 에 따른 명목 적출소득의 R<sup>2</sup>는 0.8965이다.  
 3) Table 1의 정원에 따른 징세비의 R<sup>2</sup>는 0.8612이다.

Table 7. 연도별 실질 적출소득 및 징세비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실질 적출소득	징세비
2005	3,016	9,765
2006	7,053	10,238
2007	7,037	10,820
2008	5,322	12,396
2009	4,475	13,007
2010	3,760	13,418
2011	5,429	13,644
2012	4,995	13,397
2013	5,728	13,657
2014	4,875	14,629
2015	5,161	14,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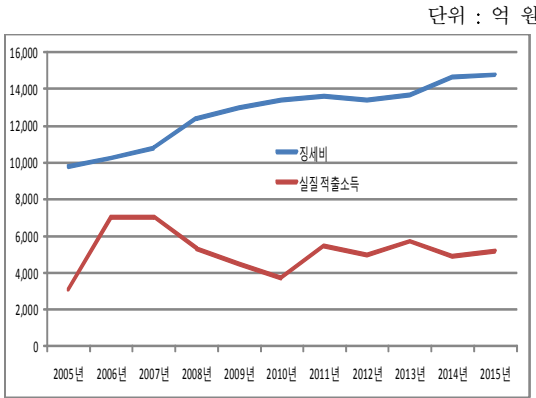


Figure 3. 연도별 실질 적출소득 및 징세비 추이

징세비를 독립변수로 한 실질 적출소득에 대한 그래프는 Figure 4와 같으며 이에 대한  $R^2$  값은 0.0487로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매우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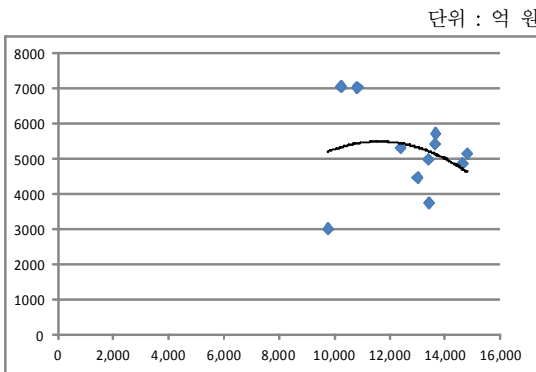


Figure 4. 징세비와 실질 적출소득 간 상관관계

상기의 징세비와 실질 적출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약한 이유는 징세비 지출규모와 세무조사 대상 인원이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징세비와 세무조사 대상 인원 간의 상관관계는 이상치가 존재하는 2006년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한 Figure 5의 그래프와 같으며 세무조사 대상 인원을 독립변수로 한 세무조사 대상 인원과 징세비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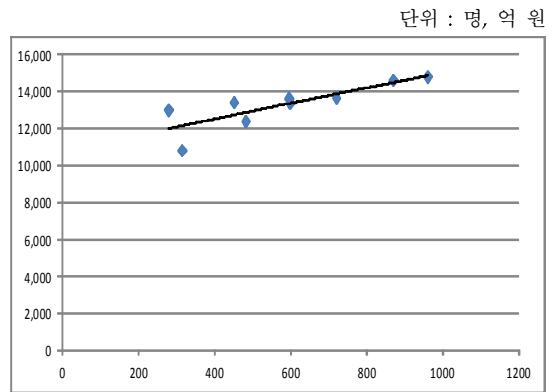


Figure 5. 세무조사 대상 인원과 징세비 간 상관관계

징세비와 적출소득이 세무조사 대상 인원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징세비와 적출소득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적출소득 역시 세무조사 대상 인원의 영향으로 인한 적출소득의 변동효과를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즉, 징세비와 적출소득 간의 상관관계는 세무조사 대상 인원이 징세비와 명목 적출소득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의 각각의 종속변수인 징세비와 명목 적출소득 간의 상관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징세비와 명목 적출소득 간 상관분석

징세비와 적출소득이 세무조사 대상 인원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징세비와 적출소득 간의 상관분석은 명목 적출소득으로 분석 하였다. 연도별 세무조사 대상 인원별 명목 적출소득 및 징세비 현황은 Table 8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6과 같다.

4)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조사 대상 인원과 징세비 간  $R^2$  값은 0.6803이다.

Table 8. 연도별 세무조사 대상 인원별 명목 적출소득 및 징세비

단위 : 명, 억 원

연도	인원	명목 적출소득	징세비
2007	315	5,253	10,820
2008	482	6,079	12,396
2009	280	2,969	13,007
2010	451	4,018	13,418
2011	596	7,667	13,644
2012	598	7,078	13,397
2013	721	9,786	13,657
2014	870	10,051	14,629
2015	960	11,741	14,806

자료 :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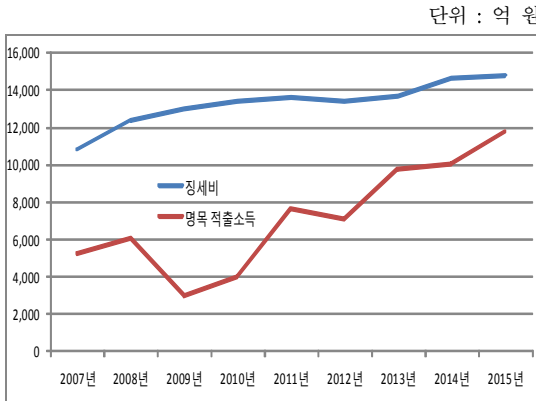


Figure 6. 연도별 명목 적출소득 및 징세비 추이

징세비와 명목 적출소득을 세무조사 대상 인원 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 인원을 200명부터 1,000명까지 100명 단위로 구간을 구성하였으며 Table 9와 같다. 500명 이상 600명 미만 구간은 2011년과 2012년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Table 9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7과 같다. 징세비의 경우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구간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대상 인원 에 대해서 대체로 비례하며  $R^2$  값은 0.6584이다. 명목 적출소득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 인원 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R^2$  값은 0.9798이다.

Table 9. 세무조사 대상 인원별 징세비 및 명목 적출소득

단위 : 명, 억 원

세무조사 대상 인원	징세비	명목 적출소득
200~299	13,007	2,969
300~399	10,820	5,253
400~499	12,396	6,079
500~599	13,521	7,373
600~699	-	-
700~799	13,657	9,786
800~899	14,629	10,051
900~1,000	14,806	11,741

단위 : 억 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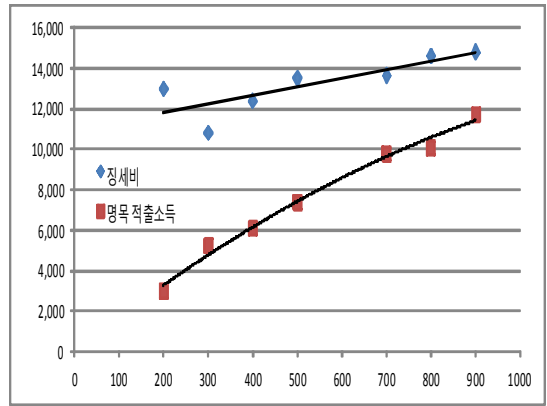


Figure 7. 세무조사 대상 인원별 징세비 및 명목 적출소득

### 2.2.4 적정 세무행정 규모 하의 징세비와 적출소득

징세비와 적출소득 간의 상관관계는 명목 적출소득으로 분석된 상관분석이 의미를 가진다. 세무조사 대상 인원과 세무공무원 규모가 징세비에 독립변수로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징세비는 명목 적출소득과 상호 영향을 미친다. 소득 적출을 위한 징세비 사전적 지출은 탈루소득에 대한 적출소득 비중을 증가시키며, 증가한 적출소득은 징수를 위한 사후적 징세비를 유발한다. 세무조사 대상 인원부터 징세비와 적출소득까지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하면 Figure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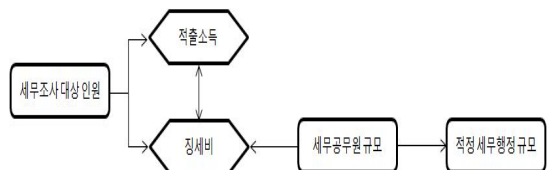


Figure 8. 징세비와 적출소득 간 상관관계도

적출소득과 징세비 간의 상관관계를 적정 세무행정 규모와 비교분석 하기 위해서는 적출소득과 징세비 간의 상관관계 하에서의 세무공무원 규모와 적정 세무행정 규모의 세무공무원 규모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적정 세무행정 규모는 18,300명 이상 19,000명 미만의 규모에서 세무공무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 규모였고, 징세비와 명목 적출소득의 경우 세무공무원 규모가 증가하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계열 분석에서 징세비가 종속변수인 경우의  $R^2$  값은 0.5497이며 명목 적출소득이 종속변수인 경우의  $R^2$  값은 0.6663이다. 즉, 명목 적출소득이 종속변수일 때 세무공무원 규모가 18,300명 이상 19,000명 미만인 상황에서 세무공무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한 세무행정 규모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2.3 최적 징세비 모형**

**2.3.1 개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세청 예산 현황<sup>5)</sup>은 Table 10 그리고 Table 11과 같다. 과세당국의 징세비 지출은 Figure 8에서 알 수 있듯이 세무공무원 규모, 적출소득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인원에 영향을 받는다. 국세청 예산에서 세무공무원 규모, 적출소득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인원에 해당하는 징세비에 대해서 각각 탈세 관련변수 여부를 상관분석을 통하여 판단하고 관련변수의 예산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징세비 모형을 도출하였다.

**Table 10. 연도별 국세청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인건비(A)	기본경비(B)	사업비(C)	예산 합계(A+B+C)
2007	766,819	99,930	267,433	1,154,182
2008	876,173	150,324	346,402	1,372,899
2009	866,270	147,551	329,865	1,343,686
2010	875,376	142,446	417,759	1,435,581
2011	926,980	139,699	396,432	1,463,111
2012	935,344	146,742	305,525	1,387,611
2013	980,872	146,806	338,834	1,466,512
2014	1,024,862	151,746	324,816	1,501,424
2015	1,065,671	156,527	365,075	1,587,273
평균 (%)	924,263 (65%)	142,419 (10%)	345,793 (25%)	1,412,475 (100%)

자료 : 연도별 국세청 세입세출 예산현황

**Table 11. 연도별 사업비 세부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과세 기반 확충	부과 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 지원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집산 시스템 운영	기타 사업	합계
2007	30,889	98,380	39,317	64,252	54,595	267,433
2008	42,659	104,285	40,076	69,539	89,843	346,402
2009	36,667	107,815	38,384	63,133	83,866	329,865
2010	33,608	104,529	37,868	111,575	130,179	417,759
2011	24,519	108,090	35,742	77,637	150,444	396,432
평균 (%)	33,668 (9%)	104,620 (29%)	38,277 (11%)	77,227 (22%)	101,785 (29%)	355,578 (100%)
연도	과세 기반 확충	탈세 대응 강화	체납 징수 관리	성실 납세 및 민생 지원	국제행정 지원	합계
2012	10,051	116,819	32,630	14,066	131,929	305,525
2013	8,999	116,872	34,745	8,986	169,232	338,834
2014	9,532	128,542	36,713	10,453	139,585	324,816
2015	5,110	137,834	43,326	5,340	173,465	365,075
평균 (%)	8,426 (3%)	125,017 (37%)	36,854 (11%)	9,716 (3%)	153,553 (46%)	333,563 (100%)

자료 : 연도별 국세청 세입세출 예산현황

국세청 예산에서 세무공무원 규모, 적출소득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인원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은 세무공무원 규모는 ‘인건비’, 적출소득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부과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지원비’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탈세 대응 강화’와 ‘체납·징수 관리’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인원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부과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지원비’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탈세 대응 강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3.2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을 고려한 최적 징세비 모형**

1) 최적 징세비 모형 개요

탈세를 고려한 징세비 산출을 위해 징세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세무행정 규모, 적출소득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인원을 각각의 관련 예산 지출과 적출소득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탈세 관련변수와 비관련변수로 구분하여 탈세 관련 총 징세비를 산출하였다. 예산지출과의 분석을 명목 적출소득으로 하는 이유는 징세비 자체가 세무조사 대상 인원의 영향을 받으며 실질 적출소득의 경우 징세비의 연도별 증가추이와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이다.<sup>6)</sup> 징세비의 경우 특별회계를

5) Table 1의 징세비와 Table 10의 예산차이는 Table 10의 경우 특별회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포함한 국세청 세출예산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 세출예산에 대한 각각의 평균치에서 관련 변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세무공무원 규모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경우 전체 인건비 중 세무조사 및 징수관련(이하 탈세 관련) 국세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인 23.14%만큼 가중치를 주었다. 전체 인건비 중 세무조사 관련 국세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은 2017년 국세청 정원 대비 본청 조사국 및 감사관 정원 추정치와 각 지방 국세청(이하 지방청)의 조사국 및 감사관 정원 추정치 합계의 비율로 산정하였다.<sup>8)</sup> 전체 인건비 중 징수관련 국세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은 2017년 국세청 정원 대비 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정원과 각 지방청 징세과(계) 정원 합계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조사국과 감사국 정원 추정치는 2017년 본청 정원의 추정치에서 2017년 조사국과 감사국 정원 외의 정원을 차감하여 산정하였다. 탈세 관련 정원에 감사국이 포함된 이유는 감사국과 조사국의 정원이 공개대상이 아니며 감사국과 조사국의 인원을 간접법(총 정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원수 차감)으로 추정하여 감사국과 조사국 정원에서 각각의 정원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7년 본청 정원 추정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본청 정원의 연도별 증가율을 합수화해서 추정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본청 정원과 지방청 정원 및 연도별 증가율은 Table 12와 같다. 2017년 지방청 정원의 추정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방청 정원 증가율이 추세를 갖지 못해 평균증가율로 추정하였다. 본청 증가율에 대한 함수와 본청 및 지방청의 2017년 정원 추정치는 Table 13과 같다.

Table 12. 본청 정원, 지방청 정원 그리고 전체 정원 및 연도별 증가율

단위 : 명, %

구분	본청		지방청	
	인원	증가율(증가원수)	인원	증가율(증가원수)
2011년	762	-	2,933	-
2012년	818	7.34(56)	3,505	17.11(512)
2013년	841	2.81(23)	4,269	21.80(764)
2014년	852	1.30(11)	4,139	-3.04(-130)
평균	818.25	3.82(30)	3,727	11.96(382)

Table 13. 본청 정원 증가율함수 및 본청과 지방청 2017년 정원 추정치

단위 : 명, %

구분	본청		지방청	
추정방법	증가율 함수*1		평균 증가율	
추정식	$y = 7.5326x - 1.55$		11.96%	
연도	인원	증가율(증가원수)	인원	증가율(증가원수)
2015년	860	0.90(8)	4,634	11.96(495)
2016년	866	0.64(6)	5,188	11.96(554)
2017년	870	0.49(4)	5,808	11.96(620)

\*1 2011년을 기준연도로 경과한 연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증가율 추정 함수

본청 및 지방청 정원 추정치 대비 징세과(계) 정원과 조사국 및 감사관 정원 추정치의 비율은 Table 14와 같다.

Table 14. 본청 및 지방청 정원 대비 징세관련 국세공무원 비율

단위 : 명

구분	정원 추정(A)	조사국 감사관 외(B)	조사국 감사관(A-B)	징세과(계)(C)	탈세 업무 관련(A-B+C)	비율(A-B+C)/(A)
본청	870	617	253	23	276	-
지방청	5,808	1,487	4,321	40	4,361	-
전체*1	20,042*2	-	4,574	63	4,637	23.14%

\*1 국세청 전체 정원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 국세공무원 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포함

\*2 2017년 10월 11일 기준 실제 정원

적출소득의 경우 2012년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율을 가중평균 하였다. 2012년 이전의 경우 ‘부과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지원비’ 중 징수관련 비율인 2.47%(사업비 평균(25%)에서 부과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지원비(29%) 중 징수관련(34%) 비율)와 2012년부터는 ‘채납·징수 관리’ 중 징수관련 비율과 ‘탈세대응 강화’에 대한 비율을 합한 10.19%(사업비 평균(25%)에서 채납·징수관리(11%) 중 징수관련(34%) 비율과 탈세대응강화(37%)의 비율)를 가중평균한 5.90% $[(2.47\% \times 5(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수) + 10.19\% \times 4(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수)]/9$ 만큼 가중치를 주었다.

세무조사 대상 인원의 경우 2012년 이전은 ‘부과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지원비’ 중 징수관련 비율인 2.47%와 2012년부터는 ‘탈세대응 강화’ 9.25%(사업비 평균(25%)에서 탈세대응강화(37%)의 비율)를 가중평균 하여 5.48% $[(2.47\% \times 5(2007년부터$

6) 연도별 실질 적출소득의 시계열 분석  $R^2$  값은 0.0016

7)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8) 국세청 조사국 및 감사국 정원은 정보공개대상이 되지 않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2011년까지 연수)+9.25%×4(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수)]/9)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부과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지원비’와 ‘체납·징수 관리’ 사업비 중 징수관련 비율은 본청과 지방청의 징세법무국 등에서의 징세과(계)의 각각의 비율을 평균한 비율로 산정하였으며, 2017년 본청과 지방청 각각의 징세관련 정원 비율과 평균비율은 Table 15와 같다.

Table 15. 2017년 본청 및 지방청 징수관련 정원 및 비율

구분	본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부서	징세과 /징세법무국	징세계 /징세관	징세과 /징세승무국	징세과 /징세승무국
비율	29%(23/78)	31%(8/26)	28%(9/32)	33%(5/15)
구분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전체 평균
부서	징세과 /징세승무국	징세과 /징세승무국	징세과 /징세승무국	-
비율	43%(6/14)	43%(6/14)	33%(6/18)	34%

자료 : 국세청

상기 예산지출 항목별 명목 적출소득을 종속 변수로 상관분석한 그래프는 Figure 9와 같으며, 각각의 상관분석에 대한 결정계수 값은 Table 16과 같다. 결정계수 값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탈세 관련변수로 판단하였다.

Table 16. 예산지출 항목별 탈세 관련변수 판단

구분	세무공무원 규모	적출소득	세무조사 대상 인원
$R^2$	0.7046	0.7498	0.7104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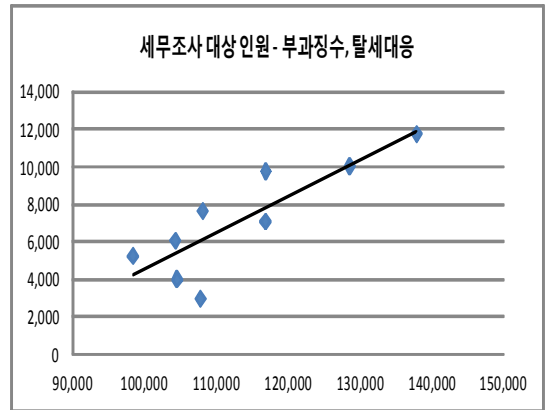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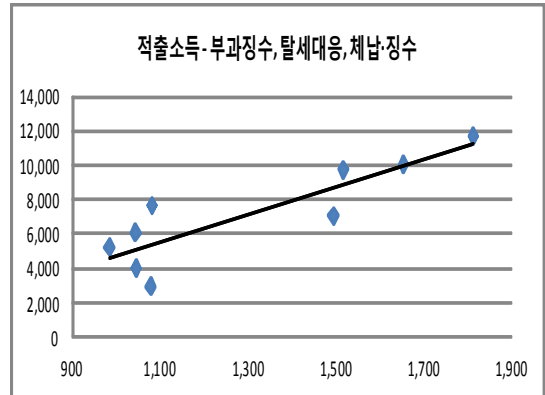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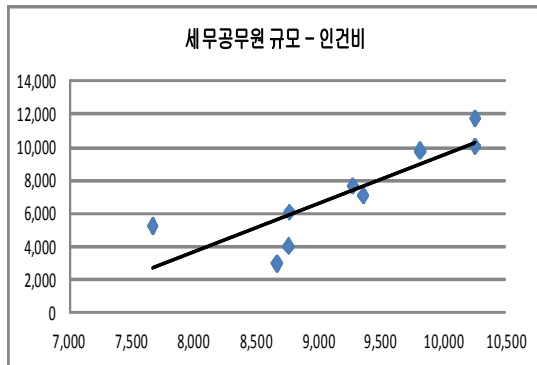


Figure 9. 예산지출 항목별 명목 적출소득 간 상관분석

2) 탈세 관련 징세비 산출

탈세 관련 징세비는 상기 인건비 가중치 23.14%, 적출소득 가중치 5.90%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인원 가중치 5.48%의 합계인 34.52%를 Table 1의 징세비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연도별 탈세 관련 징세비 추정치는 Figure 10과 같다.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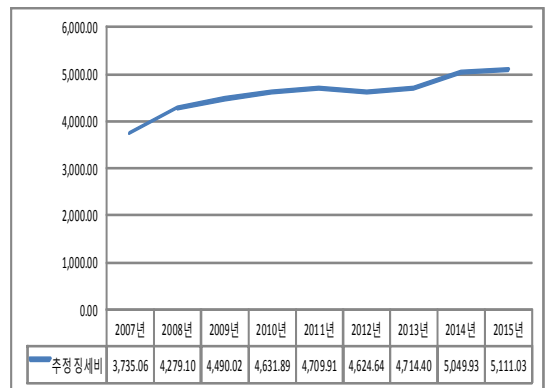


Figure 10. 탈세 관련변수를 고려한 징세비 지출규모

최적 징세비 모형을 탈세 관련변수를 고려한 징세비(이하 추정 징세비)와 이로 인한 적출소득의 감소분의 합을 징세비 지출규모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Figure 10의 연도별 추정 징세비를 명목 적출소득에 대한 독립변수로 한 상관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는 Figure 11과 같다. 추정 징세비를 독립변수로 한 명목 적출소득 간 상관분석에서의  $R^2$  값은 0.6663으로 상관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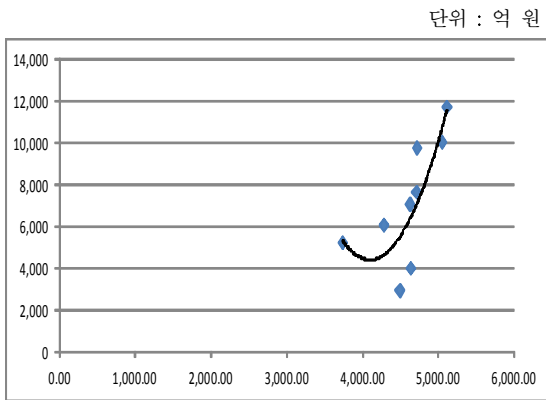


Figure 11. 추정 징세비와 명목 적출소득 간 상관분석

3) 탈세 관련 징세비 지출로 인한 탈루소득 감소분 추정

탈세 관련 징세비 지출로 인한 탈루소득 감소분의 추정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결정계수를 활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산정하였다. 첫째, 세무조사 대상 인원의 규모와 추정 징세비 지출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둘째, 추정 징세비의 지출은 실질 적출소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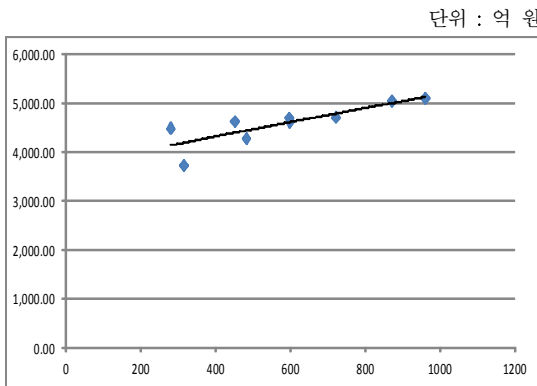


Figure 12. 세무조사 대상 인원과 추정 징세비 간 상관분석

세무조사 대상 인원의 규모와 추정 징세비 지출의 상관관계는 Figure 12와 같다. 추정 징세비는 세무조사 대상 인원에 대해서 대체로 비례하며 선형 추세선에 대한  $R^2$  값은 0.6803으로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추정 징세비와 실질 적출소득의 상관관계는 Figure 13과 같다. 추정 징세비에 대한 선형 추세선은 (-)의 기울기<sup>9)</sup>를 가지며 다항식 추세선에 대한  $R^2$  값은 0.5930으로 어느 정도의 상관도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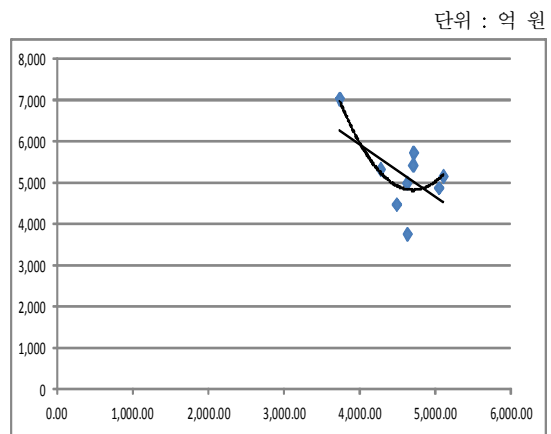


Figure 13. 추정 징세비와 실질 적출소득 간 상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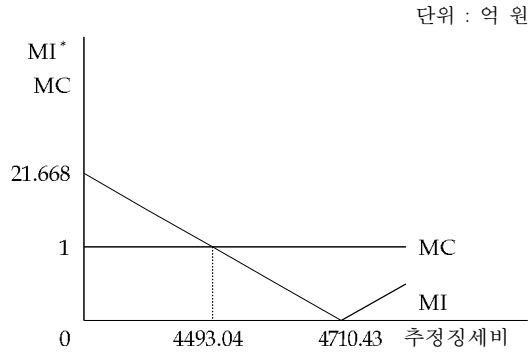
위 두 가설에 대한 상관분석을 바탕으로 탈세 관련 징세비의 추가적인 지출로 인한 적출소득의 감소분을 다항식 추세선으로 추정해보면, 다항식  $y = 0.0023x^2 - 21.688x + 55839$ 를 추정 징세비인  $x$ 에 대해서 미분하여 한계 적출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상기 다항식을 추정 징세비에 대해 미분하면  $y = 0.0046x - 21.688$ 이며 이는 추정 징세비 1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때마다 적출소득이 21.668억 원에서 46만원씩 감소한 금액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탈세를 고려한 최적 징세비 모형

탈세를 고려한 최적 징세비는 추정 징세비에 대한 한계비용의 지출이 이로 인해 감소하는 한계 적출소득보다 작은 추정 징세비 규모를 의미한다. 추정 징세비에 대한 한계비용은 추가적인 추정 징세비의 지출에 따른 비용의 증가액으로서 이는 추정 징세비 자체를 미분한 것이다. 추정 징세비 지출에 대한 비용에 대한 함수는  $y = x$ 이며 이를 추정 징세비인  $x$ 에 대해서 미분하면 추정 징세비에 따른 한계비용은 1이다.

9)  $y = -1.2414x + 10901$

따라서 상기 한계 적출소득과 추정 징세비에 대한 한계비용을 고려한 최적 징세비 모형은 Figure 14와 같다.



\* MI : 한계 적출소득 감소액

Figure 14. 탈세를 고려한 최적 징세비 모형

추정 징세비에 대한 한계비용이 일정한 상황에서 최적 징세비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 적출소득이 되며 상기 Figure 14에서 한계 적출소득과 추정 징세비에 대한 한계비용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추정 징세비 규모는 4,710.43억 원이다. 하지만 상기 Figure 14에서 한계 적출소득 곡선이 추정 징세비에 대한 한계비용 곡선보다 밑에 위치하는 부분에서는 즉, 추정 징세비가 4,493.0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추정 징세비의 한계비용 증가분이 한계 적출소득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추정 최적 징세비 규모는 추정 징세비가 0부터 4,493.04까지의 범위가 된다.

2.3.3 적정 세무행정 규모와 최적 징세비 모형의 비교

추정 최적 징세비 규모가 Table 1에서의 징세비 지출의 34.52% 수준이므로, 이를 실제로 지출되고 있는 징세비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추정 최적 징세비 지출을 34.52%로 나누어 기존의 지출 수준으로 회복된 징세비(이하 환산징세비)를 구해야 한다. 상기 Figure 14에서의 최적 추정 징세비 4,493.04억 원을 34.52%로 나눈 값은 13,015.76억 원이며 이는 Table 1에서 2009년의 징세비 지출인 13,007.41억 원과 상당히 근사한 값을 갖는다. 2009년의 세무공무원 규모는 18,341명으로 당초 우리나라 적정 세무행정 규모 도출에서의 세무공무원 관련범위가 18,300명 이상 19,000명 미만이었고 해당 범위에서 세무공무원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한 세무행정 규모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2009년의 징세비 지출과 세무공무원 규모는 탈세에 대해 가장 적절히 대응한 연도라고 판단된다. 실제로도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실질 적출소득 중 2009년의 적출소득이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명목 적출소득의 경우 가장 낮았다.

2.4 탈세를 고려한 우리나라 세무행정 효율성 검토

2009년은 징세비, 세무공무원 규모 그리고 적출소득에 있어서 적정한 세무행정 규모를 보였고 최적 징세비 규모와도 가장 근접했다. 하지만 2009년은 Table 1의 기간 중에서 징세비용이 가장 높은 해였다. 징세비용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다른 연도보다 세금 징수에 있어서 징세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의미이다. 세무행정 규모와 탈세를 고려한 징세비 지출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해가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이다.

2012년 탈세 대응 강화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 편성 이후 관련 사업비의 절대적인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실질 적출소득은 2011년 이후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을 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명목 적출소득과 이에 대한 부과 세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세비용의 감소추세만으로 우리나라의 세무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주장은 징세비용 산정시 탈세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적정 세무행정 규모는 총비용이 최소화 되는 세무공무원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며 최적 징세비 모형은 탈세액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추정 징세비의 지출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둘 다 효율성에 초점을 둔 모델이다. 그럼에도 2009년의 징세비용이 Table 1의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것은 기존의 징세비용 산정이 세무행정 규모와 탈세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징세비용이 갖는 의미는 과세당국이 징수한 세수 대비 포괄적인 징세비 지출의 규모를 보여주는 수준에서 그쳐야 하며, 세무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은 징수된 그리고 징수될 세수와 탈세액까지 고려된 세수 대비 징세비의 지출로 산정된 징세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탈세액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징세비용의 감소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실증적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적정 세무행정 규모와 탈세를 감안하여 도출한 최적 징세비 모형을 비교분석하여 탈세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세무행정 효율성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적정 세무행정 규모와 최적 징세비 모형의 도출 그리고 탈세를 고려한 세무행정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효율성을 갖는다.

첫째, 도출된 적정 세무행정 규모와 현재의 세무공무원 규모를 비교하여 과세당국의 세무공무원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 규모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세무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징세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기 때문이다.<sup>10)</sup> 인건비의 증가는 징세비의 증가로 이어져 동일한 세수 하에서 징세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적정 세무행정 규모의 도출은 과세당국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판단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세제운영에 따른 총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기존의 징세비용의 감소 위주의 노력뿐만이 아닌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한다. 총비용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은 87.41%<sup>11)</sup>에 달한다. 국내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보다 상당히 높은 것은 국내 세수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국세 세수 중 1위~3위는 연도별로 순위만 달리할 뿐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데 이들은 모두 신고세목이다. 즉, 납세자가 과세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지며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업무에 대한 세무사 등의 고용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세수가 큰 세목들이 신고세목에 해당하여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보다 높게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적정한 세무행정 규모 산정을 위한 총비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징세비 지출만이 아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지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추정 징세비의 산정을 통해 과세당국이 탈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추정 징세비의 산정은 실질 적출소득과 비교하여 추정 징세비의 지출이 1인당 적출소득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명목 적출소득과 세무조사 대상 인원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과세당국의 탈세 대응에 대한 적정성을 추정 징세비의 효율적인 지출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최적 징세비 모형의 도출은 기존의 탈세에 관한 연구를 납세자 개인의 일탈적 문제로 접근하던 관점에서 과세당국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여 탈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의 탈세에 관한

연구는 납세자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탈세 모형 도출이 주로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탈세모형은 납세자 외적인 차원의 변수들을 제한적인 가정으로 두어 탈세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과세당국의 역할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최적 징세비 모형의 도출은 과세당국의 탈세 관련 징세비 지출이 탈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탈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징세비 지출에 대한 효율적 예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최적 징세비 모형은 과세당국이 한계적으로 지출하는 징세비에 대해 영향을 받는 탈세액을 분석한 것으로서 과세당국의 징세비 지출을 통해 탈세액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이 아니다. 때문에 최적 징세비 모형은 과세당국의 한계 징세비 지출액보다 탈세액이 적게 감소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징세비 지출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즉, 탈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역할 강조와 징세비의 효율적 관리라는 최적 징세비 모형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탈세액은 용인하게 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 탈세와 세무행정에 관한 연구는 과세당국의 탈세에 관한 징세비 지출이 단순히 과세당국의 효율적 징세비 예산관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최적 징세비 모형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탈세액에 대한 효율적인 감소방안에 관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국세청. 2007년 국세청 예산현황  
 국세청. 2008년 국세청예산 통계자료  
 국세청. 2009년 국세청예산 통계자료  
 국세청. 2010년 국세청 예산현황  
 국세청. 2011년 국세청 예산(안) 개요  
 국세청. 2011년 예산현황  
 국세청. 2012년 국세청 예산 개요  
 국세청. 2012년 예산현황  
 국세청. 2013년 국세청 예산안 개요  
 국세청. 2013년 예산현황  
 국세청. 2014.11.19.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2014년 국세청 예산 개요  
 국세청. 2014년도 국세청 세입세출 예산현황  
 국세청. 2015년도 국세청 세입세출 예산현황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http://www.nts.go.kr>  
 Allingham, Michael G. and A. Sandmo,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10) 징세비 대비 인건비의 평균 비율은 65%

11) Table 4의 급간별 납세협력비용 대비 총비용 비율의 평균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 1972, pp. 323~338.
- Kolm, Serge C., "A Note on Optimum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 July 1973, pp. 265~270.
- Marrelli, Massimo, "On Indirect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5, 1984, pp. 181~196
- Virmani, Arvind, "Indirect Tax Evasion and Production Efficien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9, 1989, pp. 223~237.
- Alm, James & Gary H. McClelland, & William D. Schulze, "Why Do People Pay Tax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92, pp. 21~38.
- Bordignon, Massimo, "A Fairness Approach to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2, 1993, pp. 345~362.

논문투고일: 11월 30일

논문게재일: 12월 31일